

2024 「손해평가사 2차 필기노트」 2차 공지

(2024년 이론서 주요 개정내용)

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2차 필기노트」의 저자입니다. 교재에 대한 정오표 1차 공지에 이어 「2024년 이론서 개정내용(1차 공지사항 제외)」을 2차 공지합니다. 아래의 목차는 이론서의 수정대비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과목]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1. 농가가 직면하는 농업경영 위험의 주요 유형 추가(신규, p15 5)와 나. 사이)

보험은 위험관리의 한 방법이며 자신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사회적 제도이다. 농업 부문에는 ① 생산위험, ② 가격위험, ③ 제도적 위험, ④ 인적 위험 등이 존재한다.

① 생산위험=농축산물 생산과정에서 기후변화, 병해충, 가축질병 등으로 인한 생산량과 품질 저하의 위험

② 가격위험=생산한 농산물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 농산물시장은 경쟁적시장이므로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개별 생산자는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③ 제도적 위험

농업 관련 세금, 가격정책, 환경·식품안전 규제 등 정부 정책과 제도의 변동에 따른 위험. 농업부문은 많은 국가에서 높은 수준의 정책개입이 이루어짐.

④ 인적위험

개별 농민 또는 농가 구성원의 사고, 질병, 사망 등에 따른 위험

2. 위험관리의 구성요소 추가(신규, p15 5)와 나. 사이)

위험관리란 위험을 발견하고 그 발생빈도나 심도를 분석하여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위험관리의 구성요소에는 ① 지식, ② 보험(insurance), ③ 보호, ④ 대응(coping) 등이 있다.

① 지식=위험의 원인과 잠재적인 결과 등을 파악하는 활동. 농업에 있어서는 생산량, 기온, 강수량 등의 분포를 파악하는 활동이 이에 해당함. 지식은 결과와

결과 발생가능성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불확실성)에서 결과와 결과의 발생가능성이 정확히 알려져 있는 사건(위험)으로의 전환을 의미

② 보험=위험관리 차원에서 사고로부터 발생가능한 손실의 위험을 적정한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전가하는 것을 의미(농업재해보험 가입 등)

③ 보호=좋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활동을 의미. 농업에 있어서는 농업용수관리, 경지정리, 농약살포 등의 활동이 이에 해당함.

④ 대응=좋지 않은 결과를 사후적으로 완화하는 활동을 의미. 다양한 판매 및 유통경로 개척, 효율적인 노동 및 재무관리 등의 활동이 이에 해당함.

3. 농업부문의 위험관리방안 추가(신규, p16 다) 뒤)

농업의 그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산업에 비해 위험이 더 크게 존재한다. 농업 부문에서 **생산위험과 가격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은 아래와 같다.

① 생산위험=영농 다각화(여러 종류의 생산물을 분산시켜 전체 생산위험 감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수확감소위험 완화), 재해대비 기술의 수용 등

② 가격위험=영농 다각화, 농작물을 시기적으로 분산 판매, 수입보장보험 가입, 선도거래(현재 정해진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시점에 상품의 인도 및 대금지급을 약정), 계약재배 등

<농업위험의 유형과 정책수단>

위험 유형	주요 정책 수단
생산위험	농작물재해보험(수량보험, 수입보험), 비보험작물재해지원, 긴급농업재해대책
가격위험	최저가격보장제, 가격손실보상제, 수입손실보상제, 수입보장보험
제도위험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 규제에 대한 비용분담, 장려금 지원, 영농컨설팅 및 전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FTA 피해보전직불제 등
인적위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보험, 농업고용인력 증가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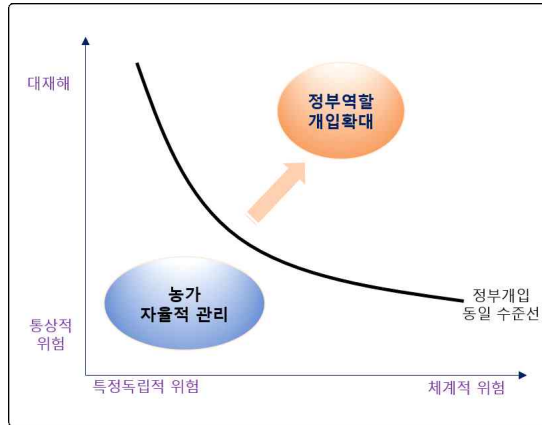
4. 농업재해보험의 성격(정책보험) 및 농업재해대응에서 정부의 역할 추가 (신규, p33 다. 내용보완)

① 농업재해대응에서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은 농업인이나 시장기구에 의해 해결하기 어려운 위험을 관리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아래와 같이 **위험의 크기와 범위를 기준으로 정부**

의 개입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즉, 위험의 영향이 크고 다수 농가에게 상호 연 관되는 경우(체계적 위험=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 정부 개입이 강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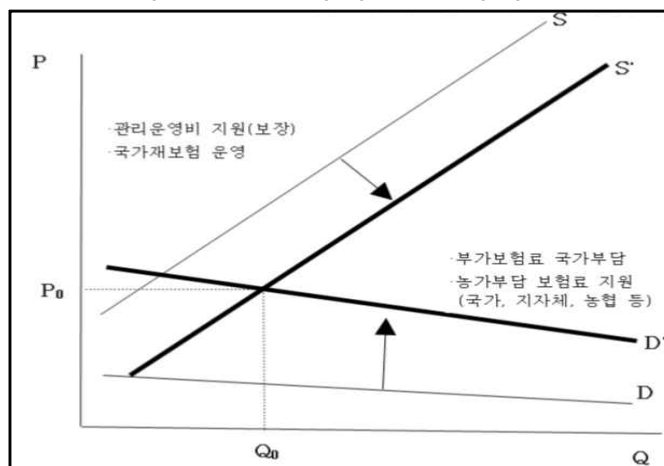
<위험 분류와 위험관리 주체 구분>



② 정책보험으로서의 농업재해보험(기존 내용)

농업재해보험은 일반적인 보험시장에만 의존하는 경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경제력이 취약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수요를 증가시키고, 보험자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재 보험을 인수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재해보험의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정책보험)

<정책보험으로서의 농업재해보험>



5. 보험대상 품목별 대상 재해(p44, 대상재해가 같은 품목 병합, 내용변경 없음)

<보험대상 품목별 대상 재해>

구분	품목	대상 재해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 배, 단감, 뽕은감 (특약) 나무보장	(적과전)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특약)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한정보장 (적과후) 태풍(강풍), 우박, 화재, 지진, 집중호우,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특약) 가을동상해, 일소피해, 부보장
수확전 종합위험	무화과 (특약) 나무보장	(7.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
	복분자	(5.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 (특약) 수확기 부보장
특정위험	인삼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폭염, 냉해
종합위험	매실, 자두, 유자, 살구 (특약) 나무보장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포도 (특약) 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참다래 (특약) 나무보장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특약) 비가림시설 부보장
	대추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특약) 비가림시설 부보장
	복숭아 (특약) 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병충해(세균구멍병)
	감귤(만감류) (특약) 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감귤(오주밀감류) (특약) 나무보장, 과실손해 추가보장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12.20일 이전) (특약) 수확개시 이후 동상해보장(12.21일 이후)
	벼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밀, 고구마,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콩, 양배추, 차, 오디, 밤, 오미자, 양파, 배추, 무, 파, 단호박, 당근, 시금치(노지), 메밀, 브로콜리, 팥, 보리, 조사료용 벼, 귀리, 양상추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감자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병충해
	마늘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특약) 조기파종보장
	호두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특약) 조수해(鳥獸害) 부보장
	고추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병충해
	해가림시설 (인삼)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농업용시설물 (특약) 재조달가액, 버섯재배사, 부대시설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특약) 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수해부보장
	비가림시설 (포도, 대추, 참다래)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특약) 화재, 비가림시설 부보장
	시설작물, 버섯작물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특약) 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6. 보험대상 품목별 보장수준(p46, 보장수준이 같은 품목 병합, 내용변경 없음)

<보험대상 품목별 보장수준>

구분	품목	보장수준(보험가입금액의 %)				
		60	70	80	85	90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 배, 단감, 뽕은감	○	○	○	○	○
수확전 종합위험	무화과	○	○	○	○	○
	복분자	○	○	○	○	○
특정위험	인삼	○	○	○	○	○
종합위험	참다래, 매실, 자두, 포도, 복숭아, 감귤, 벼, 밀, 고구마, 옥수수, 콩, 팥, 차, 오디, 밤, 대추, 오미자, 양파, 감자, 마늘,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대파, 단호박, 시금치(노지)	○	○	○	○	○
	유자, 살구, 배추(고랭지 제외), 무(고랭지 제외), 쪽파(실파), 당근, 메밀, 보리, 호두, 양상추, 귀리	○	○	○	-	-
	양배추	○	○	○	○	-
	사료용 옥수수, 조사료용 벼	30%	35%	40%	42%	45%
	브로콜리, 고추	(자기부담금) 잔존보험가입금액의 3% 또는 5%				
	해가림시설 (인삼)	(자기부담금)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				
	농업용 시설물 · 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 & 비가림시설 (포도, 대추, 참다래)	(자기부담금)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 (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 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 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 용하지 않음)				
시설작물 & 버섯작물	손해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 액 전액 보상 (단,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 (자기부담금) 보장형 별 보험가입금액의 40%, 30%, 20%, 15%, 10%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 따름

7.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기간(p49, 판매기간이 같은 품목 병합, 내용변경 없음)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기간>(2023년 기준)

품목	판매기간
사과, 배, 단감, 뽕은감	1~2월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썩갓, 감자)	2~12월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양송이, 새송이, 표고, 느타리)	2~12월
밤, 대추, 고추, 호두	4~5월
고구마,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벼, 조사료용 벼	4~6월
감귤, 단호박	5월
감자	(봄재배) 4~5월, (고랭지재배) 5~6월, (가을재배) 8~9월
배추	(고랭지) 4~6월, (가을)8~9월, (월동) 9~10월
무	(고랭지) 4~6월, (월동) 8~10월
파	(대파) 4~6월, (쪽파, 실파) 8~10월
참다래, 콩, 팥	6~7월
인삼	4~5월, 11월
당근	7~8월
양상추	7~9월
양배추, 메밀	8~9월
브로콜리	8~10월
마늘	9~11월
차, 양파, 시금치(노지)	10~11월
밀, 보리, 귀리	10~12월
포도, 유자, 자두, 매실, 복숭아, 오디, 복분자, 오미자, 무화과, 살구	11~12월

※ 판매기간은 월 단위로 기재하였으나, 구체적인 일 단위 일정은 ①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보험판매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며 ②보험사업자는 보험판매전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 등을 통해 대농업인 홍보 실시 ③판매기간은 변동가능성 있음

※ 판매 기간 및 사업지역 변경 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자체로 별도 통보, 보험사업자는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을 통해 홍보

※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 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8. 종합(기타)과수의 평년수확량 산출식 세부적으로 정리
(감귤(온주밀감/만감류) · 복분자 · 오디 등 보완, p88 (마)의 ②)

□ 평년수확량 = [A + (B - A) × (1 - Y / 5)] × C / B

○ A(과거평균수확량) = \sum 과거 5년간 수확량 ÷ Y

○ B(평균표준수확량) = \sum 과거 5년간 표준수확량 ÷ Y

○ C(당해연도(가입연도) 표준수확량)

○ Y = 과거수확량 산출연도 횟수(가입횟수)

※ 이때, 평년수확량은 보험가입연도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복숭아, 밤, 포도, 무화과 제외)

* 사과대추는 과거 가입이력 0회/1회/2회인 경우 표준수확량의 70/80/90%를 한도로 한다.

※ 복분자, 오디의 경우 (A × Y / 5) + [B × (1 - Y / 5)] 로 산출한다.

* 복분자: A(과거결과모지수 평균) = \sum 과거 5개년 포기당 평균결과모지수 ÷ Y,
B(표준결과모지수) = 포기당 5개(2~4년) 또는 4개(5~11년)

이때, 평년결과모지수는 보험가입연도 표준결과모지수의 50~130% 수준에서 결정한다.

* 오디: A(과거평균결실수) = \sum 과거 5개년 결실수 ÷ Y,

B(평균표준결실수) = \sum 과거 5개년 표준결실수 ÷ Y

이때, 평년결실수는 보험가입연도 표준결실수의 130%를 한도로 산출한다.

□ 과거수확량 산출방법

○ 수확량조사 시행한 경우: 조사수확량 > 평년수확량의 50% → 조사수확량,
평년수확량의 50% ≥ 조사수확량 → 평년수확량의 50%

※ 감귤(온주밀감류)의 경우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1 - 피해율) ≥ 평년수확량의 50% →
평년수확량 × (1 - 피해율), 평년수확량의 50% > 평년수확량 × (1 - 피해율) → 평년수확량 50%

* 피해율 = MIN[보통약관 피해율 + (동상해 피해율 × 수확기잔존비율), 100%]

※ 복분자의 경우 실제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의 50% → 실제결과모지수,
평년결과모지수의 50% ≥ 실제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의 50%

※ 오디의 경우 조사결실수 > 평년결실수의 50% → 조사결실수,
평년결실수의 50% ≥ 조사결실수 → 평년결실수의 50%

○ 무사고로 수확량조사 시행하지 않은 경우: 표준수확량의 1.1배와 평년수확량의
1.1배 중 큰 값을 적용한다.

※ 복숭아, 포도, 감귤(만감류)의 경우 수확전 착과수 조사를 한 값을 적용한다.
(수확량 = 착과수조사값 × 평균과중)

※ 복분자의 경우 MAX(평년결과모지수, 표준결과모지수) × 1.1

※ 오디의 경우 MAX(평년결실수, 표준결실수) × 1.1

9. 인삼의 보험가입금액 산정방법 변경(p104, 표(연근별 보상가액))

<연근별 (보상)가액>

구분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
인삼	10,200원	11,600원	13,400원	15,000원	17,600원

※ 보험가입년도의 연근+1년 적용하여 가입금액 산정(신규)

10. 발작물 중 차(茶)의 평년수확량 산출식 변경(p111 (5)의 (나))

- 평년수확량 = [A + (B - A) × (1 - Y / 5)] × C / B
 - A(과거평균수확량) = ∑과거 5년간 수확량 ÷ Y
 - B(평균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표준수확량 ÷ Y
 - C(표준수확량) = 가입연도 표준수확량
 - Y = 과거수확량 산출연도 횟수(가입횟수)
- ※ 이때, 평년수확량은 보험가입연도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 ※ 차(茶)의 경우 상기 식에 따라 구한 기준평년수확량에 수확면적률을 곱한 값을 평년수확량으로 한다.
- * 수확면적률: 포장면적 대비 수확면적 비율로 산출하며, 차(茶)를 재배하지 않는 면적(고랑 등)의 비율을 제외한 가입면적 대비 실제 수확면적의 비율
- ※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등 생산비보장방식 품목 제외
- 과거수확량 산출방법
 - 수확량조사 시행한 경우: 조사수확량 > 평년수확량의 50% → 조사수확량, 평년수확량의 50% ≤ 조사수확량 → 평년수확량의 50%
 - ※ 차(茶)의 경우 환산조사수확량 > 기준평년수확량의 50% → 환산조사수확량, 기준평년수확량의 50% ≤ 환산조사수확량 → 기준평년수확량의 50%
 - * 환산조사수확량 = 조사수확량 ÷ 수확면적률
 - 무사고로 수확량조사 시행하지 않은 경우: 표준수확량의 1.1배와 평년수확량의 1.1배 중 큰 값을 적용한다.
 - ※ 마늘의 경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확량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상기 적용
 - ※ 차(茶)의 경우 MAX(가입연도 표준수확량, 기준평년수확량) x 1.1

11.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지역 및 판매기간 내용 추가(p124, 나. 뒤)

품목	사업지역	판매기간
고구마	경기(여주, 이천), 전남(해남, 영암), 충남(당진, 아산)	4~6월
콩	강원(정선), 전북(김제), 전남(무안), 경북(문경), 제주(서귀포, 제주), 경기(파주)	6~7월
양배추	제주(서귀포, 제주)	8~9월
감자(가을재배)	전남(보성)	8~9월
마늘	전남(고흥), 경북(의성), 경남(창녕), 충남(서산, 태안), 제주(서귀포, 제주)	10~11월
양파	전남(함평, 무안), 전북(익산), 경북(청도), 경남(창녕, 합천)	10~11월
포도	경기(가평, 화성), 경북(상주, 영주, 영천, 경산)	11~12월

[2과목]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1. 부화장의 보험가액 산정방법(신규, p361 (4) 뒤)

(5) 부화장의 보험가액

구분	해당 주령	보험가액
종란	-	회사와 계약당시 협정한 가액
병아리	생후 1주 미만	사고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의 육용실용계 병아리 평균가격

2. 감귤(온주밀감류) 수확전 사고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과실손해피해율 산식 변경 (p428 중간 박스 내)

(수정 전) $A+(1-A) \times B \times (1-\text{미보상비율})$

A=(1-미보상비율)을 제거한 수확전 과실손해피해율

B=(1-미보상비율)을 제거한 과실손해피해율

(수정 후) $[A+(1-A) \times B] \times (1-\text{미보상비율})$

수정 전

- (수확전 사고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과실손해피해율 = {최종 수확전 과실손해 피해율 ÷ (1-최종 수확전 과실손해 조사 미보상비율)} + {(1 - (최종 수확전 과실손해 피해율 ÷ (1 - 최종 수확전 과실손해 조사 미보상비율))) × (과실손해 피해율 ÷ (1 - 과실손해미보상비율))} × {1 - 최댓값(최종 수확전 과실손해 조사 미보상비율, 과실손해 미보상비율)}
- ◆ 수확전 과실손해 피해율 = {100%형 피해과실수 ÷ (정상 과실수 + 100%형 피해과실수)} × (1-미보상비율)
- ◆ 최종 수확전 과실손해 피해율 = {(이전 100%피해과실수 + 금차 100%피해과실수) ÷ (정상 과실수 + 100%형 피해과실수)} × (1-미보상비율)

수정 후

- (수확전 사고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과실손해피해율 = [(최종 수확전 과실손해 피해율 ÷ (1-최종 수확전 과실손해 조사 미보상비율)) + {(1 - (최종 수확전 과실손해 피해율 ÷ (1 - 최종 수확전 과실손해 조사 미보상비율))) × (과실손해 피해율 ÷ (1 - 과실손해미보상비율))}] × {1 - 최댓값(최종 수확전 과실손해 조사 미보상비율, 과실손해 미보상비율)}
- ◆ 수확전 과실손해 피해율 = {100%형 피해과실수 ÷ (정상 과실수 + 100%형 피해과실수)} × (1-미보상비율)
- ◆ 최종 수확전 과실손해 피해율 = {(이전 100%피해과실수 + 금차 100%피해과실수) ÷ (정상 과실수 + 100%형 피해과실수)} × (1-미보상비율)

[부록]

〈별표 7〉 고추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신규)

등 급	종 류	인정비율
1등급	역병, 풋마름병, 바이러스병, 세균성점무늬병, 탄저병	70%
2등급	잿빛곰팡이병, 시들음병, 담배가루이, 담배나방	50%
3등급	흰가루병, 균핵병, 무름병, 진딧물 및 기타	30%

〈별표8〉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사고에 관한 보험금 계산방법(신규)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별표9〉 품목별 감수과실수 및 피해율 산정방법

기존 〈별표7〉 → 〈별표9〉로 변경. 끝.